

EU법상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지위

유진호* · 이상일**†

* 한국선급, ** 한국해양대학교

Recognized Organization's Legal Position under EU Laws

Jinho Yoo* · Sang-il Lee**†

* Korean Register of Shipping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핵심용어 : 위탁, 공인선박검사기관, 자격요건, 감독

Key Words : Delegation, Recognized Organization, Requirement of RO, Oversight

2017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EU법상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지위

유진호 · 이상일
2017. 04. 27.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EU법상 대행기관 지위

<법원>

DIRECTIVE 2009/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common rules and standards for ship inspection and survey organisations and for the relevant activities of maritime administrations.
MSC 92/26/Add.1, Annex 1 Resolution MSC.349(92)(Adopted on 21 June 2013) - Code for Recognized Organization
REGULATION (EC) No 391/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common rules and standards for ship inspection and survey organisations.

EU법상 대행기관 지위

제정배경
원래 1994년 11월 22일 이사회 지침으로서 제정되었던 것이 수차례 실제적인 내용의 개정이 있었고 규범 명료화의 차원에서 마침내 유럽연합의 2가지의 입법수단, 즉 지침(Directive)과 규칙(Regulation)으로 나누어 재편하게 되었다

각 회원국은 공인선박검사기관이 수탁업무에 대해 '적절한 방어권 행사'(exercise of appropriate rights of defence)를 포함한 비례적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 및 사법적 보호(proportionate legal safeguards and judicial protection)를 받도록 고려

EU법상 대행기관 지위

회원국은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승인을 정지하거나 철회할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본 지침의 서문에 규정됨으로서, 국가사무로서 선박검사권한이 위탁에 의해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로 권한의 소재가 변동되는 개념의 권한의 이전보다는 주관청과 공인선박검사기관이 함께 검사권을 공유하는 공유적 권한의 이전

(EU의 회원국들이 SOLAS, MARPOL, LL 등과 같은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협약증서를 발급할 국가적 책무가 있으며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공인선박검사기관(Recognized Organization; RO)을 지정하여 국가사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는 일반규정

책임제한 규정의 명시
-신체손해
-재산손해

* First Author : jhyoo@krs.co.kr

† Corresponding Author : silee@kmou.ac.kr, 051-410-5099